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77 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김장겸・박덕흠・권성동

우재준 • 박충권 • 김기현

이인선 · 조정훈 · 이상휘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65조제1항은 대통령,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특정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, 국무위원, 공무원 등에게 피해를 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 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발의자와 정당에 그 탄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제5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2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탄핵 심판비용)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.

- 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나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탄핵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의원과 정당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대표발의자나 소속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같다.
- 1.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
- 2.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
- 3. 탄핵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연대 부담 비율은 「민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1.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와 그 소속 정당의 수

- 2.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
- ④ 제3항의 연대 부담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, 제421조,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4조의2(탄핵 심판비용) ① 헌
	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비용은
	국가부담으로 한다.
	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
	판단하는 경우 탄핵소추안 대
	표발의자나 그가 소속된 정당
	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
	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 심
	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
	의원과 정당이 연대하여 부담
	하게 할 수 있다. 대표발의자나
	소속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에
	도 같다.
	1.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
	<u>경우</u>
	2.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

경우

- 3. 탄핵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연대 부담 비율은 「민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와
 그 소속 정당의 수
- 2.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
- ④ 제3항의 연대 부담에 관하
 여는 「민법」 제413조부터 제
 416조까지, 제421조, 제423조
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
 준용한다.